향판(鄕判)의 운명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실체도 불분명한 여론은 냄비 속의 물처럼 들끓다가도 금세 식어버린다. 지난 몇 주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황제노역'사태는 '향판'이라는 희생양을 찾아 비난의 화살을 퍼붓더니 이제 잠잠해졌다. 늘 당하기만 하는 약자의 운명이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그저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허둥대다만 언론, 사법부, 검찰이었다. 일당 5억 원으로 벌금을 때운 그룹 전 회장과 '향판' 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대충 얼버무린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사법부는 아예 지역법관제를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사법부가 여론에 떠밀려서 스스로 지역유지, 지역법조인 등과의 유착 또는 유착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제도의 존폐를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향판(鄕判)', 대법관에 오르면 우러러 보다가도 '황제노역' 같은 사건이 터지면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하는 그들의 운명이 참으로 딱하다. 올곧고 청빈하여 존경받는 향판도 많을 텐데 지금 여론은 그들을 싸잡아 낙인을 찍고 있다. 그렇다면 제도를 없애버리면 이런 사태가 더 이상 생기지 않을까. 단언컨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2년 주기 순환 인사로 '향검(鄕檢)' 없는 검찰에서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스폰서 비리를 보면 인사제도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향판과 향검, 전관예우, 법조윤리, 재판 당시 양형기준의 부재, 지나친 환형유치 재량의 폭 등 모두가 얽혀있는 문제다.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향변(鄕辯)이나 지역유

하 태 훈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지들과 친분이 생겨 법과 양심의 한편에 인연이 자리하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역법관제는 장점이 많아 도입한 제도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두가 서울과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현실에서 그나마 지역법관제가 있어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도 있으니 대부분의 판사들이 만족하는 제도다. 문제는 서울판사냐 지방판사냐가 아니라 법관이 국민을 만족시키지 못한 판결을 내린데 있는 것이다.

'황제노역' 해프닝은 검사와 법관의 재량이 크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환형유치제도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인데 유치기간과 하루 유치 금액은 전체 벌금액을 감안해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니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 판검사가 전관이었던 변호사, 지방토호와 유착이 커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서도 억대가 넘는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향검과 향판의 문제로 딱지를 붙이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묵묵히 수사하고 재판하는 지방의 검사와 판사들을 근거 없이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이다. 삼성 이건희, SK 손길승, 선박왕 권혁 등등 재벌총수들도 환형유치 일당을 억대로 산정 받았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들의 근무지가 지방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한이 매우 크다는데 있다고 봐야한다. 통제받지 않는 재량의 폭이 크면 클수록 판·검사마다 지역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재판 당시에는 횡령배임죄나 조세포탈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검사는 벌금형과 그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형하였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2억5천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에 벌금은 254억 원으로 감형했다. 노역일당은 5억 원으로 오히려 두 배로 높여줬다. 이 같이 양형기준과 법원의 유치기간 산정에 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법관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다.

물론 그 재량권행사에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변호인의 전관예우, 피고인과의 각종의 인연이 작용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법관의 재량의 폭을 통제한 이후에 재벌총수들이 예전과는 달리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줄줄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변화를 보면 향검과 향판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에 재벌총수들에게 특혜처럼 적용되던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솜방망이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환형유치기간과 노역금 산정기준, 환형유치로 대체하는 벌금액의 하루 상한선 등을 정해서 공표해야 한다. 그래야 재판부마다 지역마다 생길 수 있는 편차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이 감시의 눈을 밝혀 부당한 편차를 집어낼 수 있다. 물론 기준을 정해 운영한다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은 아니다. 그들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제대로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전 방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이번 문제는 지역사회의 폐쇄성이라는 특수성과 함께, 장기간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법관제의 폐해가 함께 작용한 것일 수 있다. 지역법관제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역 법관이든 서울 법관이든 잘못된 판결이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법원 내·외부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론화하고 엄정한 감찰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